**‘소리보임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소리보임”으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① 본 동아리는 수화 관련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총무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군입대, 휴학 등 사퇴 사유가 적합할 시에는, 직접 인수인계 후, 직책을 넘기는 것으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 후보가 있을 경우, 임원진의 선출은 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선출된다.

② 임원진 후보가 없을 경우, 해당 연도 말까지 모임 등에서 임원진을 결정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부회장은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정기모임 장소 예약을 수행한다.

③ 총무는 예산관리 및 지원금 신청을 수행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과 홍보팀으로 구성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필요 시에 진행한다.

②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학기별로 정기모임 4회 이상 미참여 시, 회의를 통해 동아리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② 범법행위 및 사회적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, 회의를 통해 동아리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③. 동아리 방을 동아리 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용할 시에는 동아리원들에게 협조를 구한 뒤 사용하도록 하고, 사용 후 동아리 방을 정돈한다.

④ 동아리 원은 개강총회에 필수로 참여하되, 개강총회에 불참했을 시 생기는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당한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임원진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② 동아리 회원 가입 양식을 작성하여 임원진에게 제출한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임원진들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② 동아리 탈퇴 시, 회비는 환불이 불가하다. 단, 가입 학기에 진행되는 개강총회 이전에 탈퇴를 요구할 시, 회비 환불이 성립한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① 학기마다 정해진 정기모임 요일 및 시간에 진행한다. 단, 시험기간이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변동된 사항을 동아리 원들에게 공지한다.

**제 2조 [총회]**

① 매 학기별로 개강총회와 종강총회를 진행한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임원진이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회장 혹은 총무는 총회에서 해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1.03.24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